「2024 공연예술 유통」 사업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단체-공연장, 중앙-지역, 민간-국공립 등 간의 협력을 통한 공연예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**'2024 공연예술 유통'**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. 새로운 기획 및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 공연을 전국으로 유통·확대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2024년 사업 추진 방향

① 협력적 공연유통 방식 지향

- ㅇ **(기본방향)** 전국 공연관객의 예술적 경험 확장과 함께 공연시장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**협력적 공연유통 활성화 추진**
- ㅇ **(규모)** 중형 우수 콘텐츠 창·제작 유통 활로 개척
- ㅇ **(유통)** 지역 공연시장 활성화, 고객지향적 관객분석·마케팅 시도
- ㅇ **(협력)**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의 **책임감 있는 협력 구조 지향**

②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전국 공연관객 확대, 마케팅 강화

- ㅇ **(대상 공연)** 장기적 전국유통이 가능한 기존 공연작품을 활용한 공연, 지역별 관객 맞춤형 기획력 필요
- ㅇ **(유료티켓)** 전국적 건강한 공연시장 조성을 위해 '유료티켓 정책 활용' 필수,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개별 판매 데이터 공개
- ㅇ **(마케팅)** 유료관객 모객 및 지역 관객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 마케팅 적용·실행 기회, 대상 관객 맞춤형 홍보마케팅 방안 도출

③ 참여주체 간 균형적인 협력 관계 조성

- ㅇ **(협력안 도출) 참여주체간 기획·제작·유통 과정의 적극적, 균형적 협 력안 조성 및**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조성 필요

□ 공모개요

○ **(공 모 명) 2024 공연예술 유통**

○ **(공모방향)** 공연기획자·단체·공연장 등의 협력을 통한 전국 공연 유통 확대, 기획·마케팅을 강화하여 전국 유료관객 개발·확대로 공연시장 활성화

○ **(지원기간)** '24년 4월~12월

○ **(지원대상)** ①민간 공연단체 / ②문예회관

○ **(지원내용)** 공연 제작·유통비

○ **(지원규모)** 총 92억 / 건별 최소 2억원~최대 5억원 지원 가능

* 공연 규모·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지원신청 보조금액을 전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
* 총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의 최소 30% 이상 자부담금 책정 필수

○ **(지원장르)** 연극, 뮤지컬, 무용, 클래식, 오페라, 국악

* 공연의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 제외

* 장르 구분

국악	연희, 국악성악, 국악기악, 민요 등
무용	발레, 현대무용, 한국무용 등
뮤지컬	창작뮤지컬
오페라	오페라(창작오페라 포함)
클래식 음악	현대음악, 오케스트라, 실내악, 합창 등 성악 및 기악
연극	연극(창극, 인형극, 마당극, 마임(넌버벌) 등 포함)

* 갈라콘서트 형식의 사업(공연)은 지원 신청 불가

□ 공모 세부 내용

○ **(신청 주체) 민간 공연단체(기획제작사 포함), 문예회관**

* 국내·외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민간공연단체·법인·기획제작사(단, 일시적 공연권 보유로 유통·배급이 주사업인 경우 신청 불가)

* 문예회관은 '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' 기준이며,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

* 서울 소재 문예회관 신청 불가 및 공연단체의 서울 공연도 신청 불가

○ **(신청대상 사업)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기 창제작 작품**을 활용하여 공연단체·공연장과의 **협력을 기반**으로, **전국 유통·확대가 가능한 중규모 공연**

- **(작품)** '2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공연·발표된 **기 창작작품**

*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(tryout) 공연, 전막 쇼케이스 공연은 발표된 기 창작작품으로 인정

- **(공연최소조건) 연내 최소 2개 지역*, 총 6회 이상**의 **유료공연 필수** 개최

* 서울 지역 개최 공연 제외

* 지역구분: 광역시도 기준으로 구분(인천, 경기, 강원, 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, 광주, 전북, 전남, 대구, 부산, 울산, 경북, 경남, 제주)

- **(가점)** ①인구 감소지역(군 이하 단위만 해당) 및 ②혁신도시 공연, ③타 기관(재단)으로부터 국비·지방비 등 지원 등 창작지원 선정된 공연 작품
  * 행정안전부 지정 '인구감소지역' 참고 ▶ 링크
  * 국토교통부 지정 '혁신도시' 참고 ▶ 링크
- **(티켓)** 장당 **최소 정가 10,000원 이상** 책정하되, **온라인 티켓예매·발권 필수**
  *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  *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에서 '24년 티켓판매수·판매액 공개 예정
- **(수익금)** 총 자부담을 초과하는 매출액(티켓 판매액, 부가상품 판매, 후원금 등)은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 및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- **(협력대상)** 민간공연단체, 문예회관, 민간공연장 등
  * 민간-공립, 공연단체-공연장, 중앙-지역 등의 **공동제작·공동유통 등을 위한 협력 필수**

신청주체	협력 가능대상 예시	내용
① 민간공연단체	[(필수)협력1] 문예회관 [협력2] 민간 공연장·시설 [협력3] 민간공연단체	민간공연단체가 공립, 민간 공연장·시설과 제작 및 유통을 위하여 협력하는 형태 등
② 문예회관	[협력1] 민간공연단체 [협력2] 민간 공연장·시설 [협력3] 타 지역 문예회관	제작역량을 갖춘 공연장·시설이 민간 공연단체와 협력하여 공립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 기반으로 작품 개선 제작, 유통하는 형태 등

- **(프로젝트 책임자)** 협력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반드시 결정하여, 지원신청서에 명시

※ 유의사항
프로젝트 책임자는 신청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질 총괄 책임자로, 신청주체 및 협력주체가 협의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책임자 1인을 선정, 사업 신청서에 명시하고 인터뷰 심의에 참여해야 함

- **(공연 공간)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전국의 공연 가능한 모든 공간***
  * 공연 공간은 공연작품과 기획 의도 등에 따라 모든 공간을 활용 가능
  * 단, 공연장소가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'안전관리 계획'(자유양식) 제출 필수
  * 기존 등록공연장 외 박물관, 미술관, 야외공연장, 유휴공간 등과 관련된 목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람

* 전국 등록공연장 리스트 <문체부>	* 전국 문예회관 리스트 <문체부>
www.mcst.go.kr - 주요정책>분야별정책>문화예술> '2022 등록공연장 현황'	www.mcst.go.kr - 주요정책>분야별정책>문화예술> - '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'
* 전국 소극장 리스트 <한국소극장협회>	* 그 외, 새로운 유휴공간 <지역문화진흥원>
http://smalltheater.or.kr - 회원 소극장 안내	www.rcda.or.kr - 자료실>연구보고서>2021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공간 운영 실태조사

○ (신청주체 및 협력주체 의무사항) * 미충족 시 서류심의에서 제외

(1) 신청주체

- **(교부신청·집행·정산)** 보조금 교부 신청,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
- **(차세대기획인력 동반)** 공연기획·제작·홍보마케팅 등의 현장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획자(현장경력 3년미만) 최소 1인 필수 활용
  * 최대 2인, 사업기간 동안의 인건비 편성 가능(1개년도 기준),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  * 차세대기획인력 인건비의 경우, '24년 최저 임금액 편성 및 집행 필수
  * '23년 공연유통협력 지원 선정 단체의 경우, 사업 운영 시 선정한 차세대 기획인력 재고용 가능
- **(지역 워크숍·교육)** 해당 공연기획 방향(콘셉트)에 적합한 지역공연예술가, 지역 차세대인력, 공연관객 등 대상 교육·워크숍 최소 1회 이상 운영
  * 예시) 배리어프리 공연 관련 지역 예술가 및 관객 대상 특강 진행, 지역 내 차세대 인력 대상 무대 제작 실습 인력양성 프로그램 진행, 지역 공연 출연자 섭외를 위한 전문 워크숍 진행, 관객 대상 공연 제작 비하인드 및 렉쳐 등
  * 불가) 본 사업 수행과 무관한 워크숍·교육
- **(서면 계약 체결)**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
  * 단,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, 문체부 제정 <공연예술표준계약서(창작, 출연, 기술지원)>, <공연예술분야 표준대관계약서> 활용 권장
- **(참여예술가 사례)** 공연 참여예술가·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제공
  * 예산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제공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
- **(공연정보 아카이빙)** 공연 영상·사진, 디자인·홍보물, 참여인력정보(창작진·배우·스태프·협력기관 등) 제출
- **(마케팅컨설팅 참여)** 지역 공연관객 개발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프로그램 필수 참여
- **(관객만족도 조사 실시)** 공연 및 워크숍·교육 만족도조사 필수 실시
- **(모니터링·평가 참여)** 사업 선정 시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·협조 필수

(2) 협력주체

- **(협력주체 대상)** 민간공연단체, 문예회관, 민간공연장 등
- **협력주체별 역할 및 의무사항**
  - · **(예산협력)** 신청주체와 협력주체는 **균등한 자부담금 공동 조성 필수**
    - * **자부담금 총액은 총 사업비의 30% 이상 설정 필수,** 각 협력 주체 조성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함
    - * 자부담 내에서 균등하게 부담하되, 협력 주체의 예산협력 의지에 따라 초과 편성할 수 있음
  - · **(공간협력)** 공간을 보유·운영하는 협력주체는 **공연 공간 협력 필수**
    - * 예산안 내 공연을 위한 대관료 편성 불가
  - · **(인적협력)** 예술가, 창제작, 행정, 기술인력 등 **인적 협력 가능**

협력주체 \ 협력역할		예산협력	공간협력	인적협력
민간	공간 보유·운영 단체/기관	필수	필수	권장
	공연단체/기관	필수		권장
공립	공간 보유·운영 기관	필수	필수	권장

○ **(지원신청 불가)** 모든 참여 주체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

구 분	내 용
신청 불가	● 동일 작품으로 24년 '문화예술 전국 창제작유통 지원 사업'에 포함된 하위사업 중복신청 불가 –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, 국립예술단체 전막 공연 유통 ● <2023 공연유통협력지원> 2개년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단체 ● <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협력 사업> 및 <2023 공연유통협력지원> 사업 선정 작품 ● 서울 소재 문예회관 신청 불가 ● 민간공연장의 경우, 신청주체로는 신청불가(협력대상으로 참여 가능) ●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단체 및 문예회관**(예외없음)** ● '24년에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작품(공연)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●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, 기획제작사, 공연장, 개인예술가 등 ● 공연장, 공연단체의 협업 사업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 ●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 작품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●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 ●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,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 ● 대중음악 공연 및 정기연주회,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● 기획재정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
구 분	내 용
	● 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3.01.27.개정) 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●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●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공연장 ●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이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및 공연장

○ **(지원심의 불가)** 모든 참여주체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

* 심의·선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구 분	내 용
심의 불가	● **(미정산)**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● **(미반납)**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● **(부정수급)**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예경으로 통보된 단체·개인 ● **(저작권)**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● **(공연이력)**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공연, 사업, 작품 ● **중복선정 불가** - 심의위원회에서 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는 공연, 사업, 작품 -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더라도, 최종적으로 중복 선정 불가

사업명	중복선정	세부내용
타 기관(재단) 보조사업 * '24공연예술창작주체, 타 기관 창작지원사업 등	불가	동일한 공연, 사업, 작품은 중복 선정 불가
일자리 지원사업 * '24 문화예술 연수단원,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등	불가	동일한 인력이 지자체, 타 지원기관, 재단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(110) 예산편성 불가

○ **(예산편성)** 신청주체 및 협력주체의 '협력 공연'에 대한 창제작·유통 예산

※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

– 총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의 최소 30% 이상 자부담금으로 책정 필수

· 총 사업비(100%) = 자부담금 30% 이상 + 보조금 70% 이하

– 신청주체와 협력주체는 자부담 내에서 균등하게 부담하되, 협력 주체의 예산협력 의지에 따라 초과 편성할 수 있음(공급가액)

– 예산편성 항목 예시 (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
목	세목	자부담금	보조금	비고
인건비 (110)	**기타직보수 (02)**	- 차세대 기획인력 인건비 (최저임금 보조금 필수 편성)		* 23년 선정한 차세대 기획인력 재선정 가능 * 최저임금 외 추가 인건비 자부담 편성 가능
운영비 (210)	**일반수용비 (01)**	- 공연 창제작 관련 전문인력 사례비 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 등 전문인력 사례비 - 홍보·마케팅비 - 공연 소품비(소모품) -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		*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
	공공요금 및 제세 (02)	- 상해보험료, 화재보험료, 행사보험료 등		* 사업참여자 고용·상해보험 가입 필수
	임차료 (07)	- 연습실 대관비 - 무대, 조명, 음향 장비, 필요 물품 임차비 등 - 공연 유통(물품운송 및 버스) 관련 임차료		
	복리후생비 (12)	- 예술인 고용 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 - 차세대 기획인력 4대 보험료(사업주 부담금)		* 예술인 고용 보험 필수 가입
	일반용역비 (14)	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비(업체 용역) - 촬영 및 영상 제작대행비(업체 용역) - 홍보대행비(업체 용역) 등		* 선정 시, 본 사업의 공연영상, 사진 필수 제출
여비 (220)	**국내여비 (01)**	- 숙박비, 교통비		* 공무원여비규정 기준(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
· 사업추진비(다과,식대 등), 회의진행경비, 상근직원 인건비,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·집행 불가

· 공연을 위한 대관료 편성 불가(외부 연습실 대관비는 허용, 문예회관 공간 대관비는 불가)

· 단체 대표의 경우, 주요 역할(연출, 안무, 예술감독 등)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,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

· 부가세의 경우, 과세자(일반과세자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금)로 편성·집행 불가하나, 면세자(간이과세자 포함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금)로 편성·집행 가능 * 과세/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자로 간주(필수)

· 과세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공급가액으로 기재(협력금액 등 자부담 포함)

· 세목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 공동 편성 필수

·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필수

*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('23년 기준이므로, '24년 기준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)

총 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	회계검증수수료(원)
1억원이상 2억원미만	935,000
2억원이상 3억원미만	985,000
3억원이상 4억원미만	1,170,000
4억원이상 5억원미만	1,370,000
5억원이상 6억원미만	1,600,000
6억원이상 7억원미만	1,800,000
7억원이상 8억원미만	2,000,000

□ 공모 신청 방법

○ (공모 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

○ (공모 신청기간) 2024. 1. 3.(수) 10:00 ~ 1. 31.(수) 12:00(정오)까지

*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, **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**(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)
*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·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
*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2~3일 전 접수 권장
*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이용'

○ (신청서류) 필수 서류 외 추가 서류 *추가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
필수서류	1. 공모신청서(붙임자료 포함) 1부 (양식 제공) * 붙임자료: ① 협약 책임 이행 서약서, ②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2. 예산계획안(지역 공연별 예산내역서, 양식 제공) 1부 3. 신청주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중 1부 *고유번호증 제출 불가 4. 신청주체 최근 3년간('21~'23년) 공연 발표 주요 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* 공연 발표 주요 실적 2건 이상, 건별 증빙 1부씩(최대 3부 이내) * 공연 크레딧 등 발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프로그램북, 리플렛 등) * 파일은 저용량 변환 후 제출 * 신청주체와 협력단체 간 협약체결은 서류심의 선정단체에 한해 진행하며, 최종심의 전 '협약서' 제출 필수 (협약서 내 공연 예정일정 및 협력금액 포함 필수)

추 가 서 류	**5.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(자유양식)** * 원작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, 필수 제출 **6. 안전관리계획서 (자유양식)** * 전국의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필수 제출 **7. 유료 공연 증빙자료 (자유양식)** * 전막 트라이아웃(tryout) 공연 또는 전막 쇼케이스 경우, 유료 공연 증빙 필수 제출 (포스터_티켓 가격 명시, 티켓 예매 또는 정산 증빙자료 등) **8. 공연장 등록증** * 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문예회관의 경우 필수 제출

□ 심의 및 선정 방법

○ (심의방법)

- **(사전 행정 검토)**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
  * 필수 서류(서약서 등 포함) 누락한 경우, 서류 심의 대상에서 제외
- **(서류심의)**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장르별 심의위원의 서면 심의
- **(최종심의)** 협업 공연, 유통 계획, 협업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위원과 심층 인터뷰 및 토론 진행, 총사업비 운용 계획 및 적절성 등을 논의하여 최종 보조금액 확정

○ (심의기준)

구 분	항 목	배점(안)
1. 서류심의	○ 작품의 우수성 및 완성도	10점
	○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	20점
	○ 신청주체와 협력주체 간 협력 충실성	40점
	○ 공연의 지속적 유통·확산 가능성	30점
2. 최종심의	○ 신청주체와 프로젝트 책임자의 작품 유통·확산 의지 및 책임성	10점
	○ 신청주체 및 협력주체 간 협력 충실성	40점
	○ 예산 편성의 적절성	20점
	○ 공연의 지속적 유통·확산 가능성	30점
공통	○ **가점** - 인구 감소지역(군 이하 단위만 해당) 유통 공연 - 혁신도시 유통 공연 - 타 기관(재단)으로부터 국비·지방비 등 지원 등 창작지원 선정된 공연 작품 * 3개 부문에 모두 해당되더라도, 가점 총점은 총 5점임	5점
계		105점

○ **(심의일정 및 발표 일정(안))**

- **(서류심의)** ‘24년 2월 2주, 서류심의 진행 및 서류심의 결과발표
- **(최종심의)** ‘24년 2월 4주, 인터뷰 및 예산심의 진행

  * 신청·협력주체, 프로젝트 책임자 필수 참석, 인터뷰 일정 개별 연락

- **(최종 결과발표)** ‘24년 3월 1주, 선정 사업 대상 최종 보조금액 발표
- **(결과발표방법)**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
  *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문의

○ **(문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**

- (이메일) promokams3@gokams.or.kr

  *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응대를 위하여 이메일 문의 및 응대 진행 예정, FAQ 업데이트 등을 참고 바람